

심 사 보 고 서

2027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79
----------	-----

2021. 4. 30.(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6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4월 23일

-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

가. 제안사유

- 2027년 개최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금 등의 지원 (안 제3조)
-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 조례안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임.
- 충청권 공동유치에 따라 4개 시도가 지원 조례를 마련 중에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는 입법예고 중에 있음.
-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유치위원회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24개의 지자체가 사단법인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있음. 따라서 충청북도가 유치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충청북도보다 먼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한 광주주의 경우나 2011년 국제육상대회를 개최한 대구시의 경우 유치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구성하여 출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음에도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조례안 제9조에는 잔여재산 귀속에 관하여 유치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출연금,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면서 남은 재산의 처리를 법률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관에 따르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시)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 부대의견 : [붙임1]

의안번호	제 67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1년 4월 1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679
----------	-----

제출연월일 : 2021년 4월 1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금 등의 지원 (안 제3조)
 - 유치위원회의 설립·운영과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 가능
-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안 제6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유치위원회에 파견 및 겸임근무하게 가능

3. 의안 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①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유치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유치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치위원회의 설립·운영과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과 보조금의 용도) ① 출연금과 보조금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유치위원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
2. 유치위원회의 대회 유치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연구 활동
3. 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유치위원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집행 결산서를 사업종료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도지사는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위원회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유치위원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행정지원 등) 도지사는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유치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유치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로 본다.

관련법령 발취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11.>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추진에 따른 유치추진 사업비 및 운영비

2. 비용 발생 요인

- 유치활동추진에 따른 국외유치 활동비, 전문인력확보, 실사진행 및 FISU 대응비 등 필요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4개 시·도 공동유치추진 소요경비 / 80억원

- 유치위원회 운영(출연금 지원) : 70억원

(전문인력확보 10억원, FISU 국내 현지실사 대응 24.4억원, 대내외 홍보체계 구축 1.6억원, 국제행사 프로모션 및 해외 홍보영상제작 34억원)

- U대회추진과 운영 : 10억원

(실사진행 및 유치활동 8.65억원, 사무실운영 0.85억원, 타당성조사용역 0.5억원)

⇒ 시·도별 20억원씩 부담

나. 추계결과 : '21년 80억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공동유치 분담금 80억원 세입 편성(대전·세종·충북·충남 각 20억원씩)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기편성	추가편성					
세 입	2,000	8,000					10,000
충청권 공동유치 분담금	1,500	6,000					7,500
지방세 등 자체수입	500	2,000					2,500
세 출	2,000	8,000					10,000
유치신청서 작성 컨설팅	1,000						1,000
언론홍보 등	300						300
실사진행 등 유치활동	538	865					1,403
사무실 운영(U대회추진과)	162	85					247
타당성조사용역		50					50
유치위원회 운영		7,000					7,000

- * (기 편성 예산) 공동유치 4개 지자체에서 5억원씩 공동부담, 충북에서 세입세출 일괄편성 (추가편성예산) 공동유치 4개 지자체에서 20억원씩 공동부담, 충북에서 세입세출 일괄편성
 - 유치위원회(법인)에 70억원 출연, U대회추진과에 10억원 편성

[붙임1] 부대의견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 다음 부대의견을 제시함.

- 유치위원회의 성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함. 단, 충청권 4개 시 · 도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유치를 위해 협력이 시급한 점 또한 인정함.
-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유치를 위한 시급한 활동을 하되,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 시 충청북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것